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김문수 장관, 2월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임금체불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은 더 많이 청산할 것 강력 주문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 지침’도 함께 논의 후, 신속히 시달하여 산업현장의 혼선 최소화 당부
-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에 대한 지방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감독 방향 설정, 조만간 발표 예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2월 6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국장,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 [업종별 임금체불 증가율] ▲건설업(4,780억 원, 9.6%↑),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 원, 16.7%↑), ▲운수·창고·통신(2,478억 원, 57.0%↑)
- [체불총액/임금총액] ('11년) 0.33% → ('16년) 0.30% → ('19년) 0.28% → ('23년) 0.23%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24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23년 1조 4,112억 원)보다 2,585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p 증가했다.

- [청산액] ('19년) 1조 2,095억 → ('20년) 1조 2,544억 → ('21년) 1조 1,308억 → ('22년) 1조 1,352억
[미청산 체불액] ('19년) 5,122억 원 → ('23년) 3,733억 원 → ('24년) 3,751억 원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부터 1.24.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과 대지급금 653억 원 지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 원보다 264억 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이다.

- [집중지도기간 청산 성과] ('24년 설) 1,167억 원 → ('24년 추석) 1,290억 원 → ('25년 설) 1,554억 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주요 내용: 붙임 3]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관서장들과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개정 지침은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래 '13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하여 통상임금 판단기준(소정근로의 대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함에 따라, 일선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 붙임 4]

이번 지침은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의 인정범위가 확대된 '24.12.19.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 및 재직조건 부가 등의 유효성을 인정한 '25.1.23. 후속 대법원 판결(2019다204876)의 내용 등을 학계·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으로 임·단협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인 만큼, 해당 개정 지침은 곧바로 전 지방관서에 시달되어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근로감독의 성과를 평가하고, '25년도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확정된 「'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홍순호 (044-202-7971)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526)
		담당자	사무관	이찬웅 (044-202-7529)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권유리 (044-202-7072)

붙임1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일시) '25. 2. 6.(목) 14:00 ~ 15:0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5층 컨벤션룸)

□ 참석자

- (본부) 장관(주재), 차관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노동개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 (지방)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논의 안건

-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

□ 세부 계획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안내	
14:05~14:10	(5')	장관 인사말씀	
14:10~14:55	(45')	안건 발표 및 논의 ▶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	비공개
14:55~15:00	(5')	장관 마무리 말씀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장, 지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금체불 감축

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임금체불 해소’를 제1의 직무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6천 7백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으며,
청산을 역시 81.7%로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기관장,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작년 말 기준 3,751억 원에
달하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관장부터 일선의 근로감독관까지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민생 보호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기 위해 일선에서는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본부에서도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양형의 상향도 지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여 체불임금 청산부터 사건 수사, 피해근로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주십시오.

특히, 건설업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23일 「상습체불근절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전 지방관서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부도 대법원 판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문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개정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선 관서에서도 지침을 잘 활용하여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만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노사가 소모적 갈등이나 분쟁보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첫 기관장 회의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할 때,
노동 약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은 완성될 것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 주요 내용

1 임금체불 현황 및 특징

- '24년 체불임금 청산액 1조 6,6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미청산 체불액 3,751억 원)
- '24년 청산율 81.7%로 전년(79.1%) 대비 2.6%p 증가

- **(현황)** '24.12월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 2조 448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845억 원에 비해 14.6% 증가
 - 피해근로자는 283,212명으로 전년(275,432명) 대비 2.8% 증가, 코로나 이전 역대 최대치이던 '19년(344,977명) 대비 크게 감소(△17.9%)
- **(특징)** ①건설업 등 경기 위축, ②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③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 ④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체불 증가

2 임금체불 감축을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

- **(강제수사 활성화)** 체불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적극 추진
 - 구속영장 신청기준 정비, 체포영장 신청기준 신설, 정식의견서 송치 기준 신설 등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24.6월)
 - 구속, 체포, 통신영장, 압수수색 전년대비 28.8% 증가(1,040건 → 1,339건)
- **(근로감독 강화)** 체불 예방·청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근로감독 실시
 - 재직자 「익명제보 신고센터」 최초 운영, 이를 토대로 135개소 기획 감독 실시 → 체불임금 275억 원 적발, 126억 원 즉시 청산
 - 악의적 사업장 8개소 발굴, 6개청 동시 특별감독 → 37건 사법처리
- **(경제적 제재)**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288명), 신용제재(448명)
- **(근로기준법 개정)** 상습체불근절법 국회 통과, 각종 제재 강화 발판 마련

① 임금체불 시 강제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 기조 강화

- **(강제수사 강화)**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영장 집행, 적극적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개선
- **(형사제재 강화)**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죄의 양형 상향 요청 지속

② 대규모 임금체불 발생 시 합동 대응 실시

- **(합동대응)**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 시 「본부-지방관서 협의체」 즉시 구성·운영,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 가동
- **(특별감독)** 대규모 체불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우선 검토

③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 강화

-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 구축(~'25.3월)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업종 대상 근로감독, 기관장 지도, 지원제도 연계

④ 「상습체불근절법」 등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철저

- **(관련 법령 등 개정)**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근거 신설(출입국관리법),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대상 추가 명시(퇴직급여 보장법)
- **(구인 시 제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이 구인 신청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직업안정법 제8조 개정 추진)
-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천만 원 이상 미납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25.8월~)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⑤ 대국민 인식 전환의 기반 마련

- 노사민정협의회, 업종별 협·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 모델 구축하여 체불정보 공유, 합동 캠페인 등 지역사회 중심 인식 개선 노력 강화

- ① **[개정 배경]**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은 통상임금의 징표에 고정성 포함 → 특정시점 재직 등 조건부가시 통상임금 여부 논란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24.12.19.)로 고정성 요건 제외 →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 ② **[통상임금 판단기준 지도]**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도
 -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장래효)
 - * 다만, 해당사건 및 이미 법원에 계류중인 병행사건까지 소급효 인정
 - 이외 통상임금 판단시, 명칭 이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려
 - 통상임금 관련 단협, 취업규칙 등 변경 시 법정절차 준수 지도
- ③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 효력]** 재직조건 등은 지급 기준·대상의 선정에 불과, 임금의 포기·박탈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 유효
 - 노사합의로 임금항목의 유형·내용, 지급조건 등 자유롭게 부가 가능
- ④ **[노사협의 지원]** 노사 간담회·설명회 등 현장 중심 이해도 제고
 - 단협, 취업규칙 등에서의 조건부가로 통상임금 제외되었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새로운 법리에 부합하도록 변경 지도
 - 노사가 적극적으로 복잡한 임금구조 단순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지원
 -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컨설팅 등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적극 연계
 -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상황 진단, 문제해결을 통해 임금구성 항목 간소화·임금체계 설계 등 개선방안 도출(노사발전재단 및 민간 수행기관)